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2,999,154	13,889,975
일반회계	424,760,798	12,742,824
특별회계	38,238,356	1,147,151
기타특별회계	38,238,356	1,147,151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66,000	19,9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2,555	15,677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424,541	72,736
기반시설특별회계	81,212	2,436
섬진강댐특별회계	8,216,378	246,491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4,527,687	135,8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417,406	612,5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82,577	41,477

제 2 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888,906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